

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11. 28.(수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
담당과장	이용필 과장(044-203-5360)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	담당자	장민재 사무관(044-203-5363) 정대환 사무관(044-203-5372)

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「태양광·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」을 발표(18.5월)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*를 도입하고, 경사도 허가기준(25도→15도)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산림청, 11.27)

* 지목변경(임야→잡종지) 없이 일시(태양광 수명기간 20년)사용후 산림 원상복구

② 산지 태양광을 억제할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를 0.7로 축소(6.27)

③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'자연환경훼손 가능성'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'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'을 마련(환경부, 8.1 시행)

*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,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

④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*(11.8)

*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

□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·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,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

*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(어기구 의원 대표발의) 국회 심의중

②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 (농지법 개정)

③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·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(쪼개기)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 (전기사업법 개정)

④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 설비확인 신청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(RPS 고시 개정)

⑤ 이와 함께 태양광·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「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」 마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장민재 사무관(☎ 044-203-5363) 또는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정대환 사무관(☎ 044-203-53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재생에너지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현황

과제	추진현황	완료일정
○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	○ RPS 고시 개정('18.6월)	완료
○ 자연환경 훼손 방지	○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개정(환경부, '18.8월)	완료
○ 시공 불량,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참여기업에게 감점 부여	○ '19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기준에 반영 ('18.11.8일)	완료
○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	○ 산지법 시행령 개정(11.28일)	완료
○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	○ 태양광 및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	'19.1/4분기
○ 계획입지제도 도입	○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(어기구 의원 입법발의) 산업위 상정	'19년
○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·양수 제한	○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	'19년
○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(쪼개기) 제한	○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	'19년
○ 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전정보 제공	○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	'19년
○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	○ 연구용역 추진('18.12월~)	'19년